



다함께 행복한 교육,

# 교사노동조합연맹

수 신 교육부장관

(참조) 학교폭력대책과장

제 목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시행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질의 및 요구

## 1. 관련

- 교육부공고 제2024-1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 12-07(목) 브리핑시(11시) 보도자료

2.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은 그동안 수사권 없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 각종 민원 및 행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요구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교사노조는 학교폭력사안처리를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이관하여 학교가 안정적으로 교육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는바, 이에 교사노조는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을 통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학교 배치 확대 등 학교폭력사안처리 전체를 이관하는 방안을 현실화할 계획이 있습니까?

나. 학교와 교사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와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안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다. 학생들의 관계 회복 및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 처리를 위한 ‘원스톱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라.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를 통해 경감되는 교원의 업무는 무엇입니까?

3. 2024학년도 3월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2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모집 공고 및 학교 담당자 연수 등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통 지침 없이 시도교육청별 자율적 운영이 이루어지며, 이와 관련하여 조합원의 우려 및 고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는 학교·교사가 악성 민원에서 벗어나 ‘교육’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도입 목적에 맞게 운영이 필요한 바, 교사노조는 교육부에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업무를 명확히 명시할 것.**

- 교사와 학교는 학교폭력 발생 시 사안 접수를 하고 피해 학생의 보호와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조사는 조사관이 전담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명확히 명시해 주십시오. 특히, 학생 및 보호자와의 조사 일정 조율과 안내 또한 조사관 업무에 포함할 것.

**나.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조사’ 시 교사 배석하지 않도록 명시할 것.**

- 교사노조 조합원들은 권한 없는 교사가 ‘조사’에 동석한다는 것을 자칫 발생할지 모르는 민원에 교사들을 방패막이 세우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조사 과정은 아동학대 발생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 과정에 준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 학교폭력 조사절차에 있어 ‘학부모 또는 학생의 친족 등’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인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교원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사안 조사 이후 학교폭력 전담기구 및 학교장자체해결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교사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는 것은 공평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담조사관의 조사절차에 동석한 교원에게 조사 관련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 경감을 목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전적으로 담당하게 한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시행령 개정안 조문별 재개정 이유서 5면, 교육부 2023. 12.7.자 보도자료 1면)에도 맞지 않습니다.

**다. 시도교육청이 학교폭력전담조사관에 대한 사전 연수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것.**

- 현재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사 형태’를 보이거나, ‘아동학대나 성희롱 등으로 몰릴 가능성’, 일부 조사관의 경우 ‘보고서 작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 등을 우려하여 학교 담당교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중입니다. ‘아동학대나 성희롱 등으로 몰릴 가능성’은 그동안 교사 역시 겪어왔던 어려움으로서 단순히 교사 배석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강압적 수사 형태나 보고서 작성의 경우 시도교육청이 모집 및 사전 연수 과정 및 이후 ‘조사관’의 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해결해야 함에도 교사들에게 그 부담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보여 시정이 요구됩니다.

**4. 교사노조는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개선할 것과**

**교권 4법과 생활지도고시의 현장 안착을 위한 노력 및 학교의 교육적 역할과**

권한 강화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5. 본 질의 및 요구서에 대한 답변을 2월 23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

사무처장 권성집 사무총장 이장원 위원장 김용서  
협조자  
(교섭국장)  
시행 교사노동조합연맹24-029 (2024.02.16.) 접수 ( )  
우 073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전화 02-522-8130 전송 022-522-8131 / 공개